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소송 방안 -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소유권이
전청구, 명의이전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환가 등
강제집행 방안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서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이지만, 그 물리적 형체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의 대표적 예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들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도 저작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해금지청구권 등 특정권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지식재산권법상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을 전제로 하는 특허권, 상표권 등과 달리,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서도 처분, 이전, 등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에 대한 채권 압류 예시

집행채권이 '원화'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인 경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비트코인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물건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위 물건의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집행채권이 '비트코인'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인 경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비트코인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물건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위 물건의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런데, 위와 같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견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하는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전기신호를 물리적 실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전기신호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체동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체재산권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의 소유자 명의이전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등을 통해 출금권리자를 변경하고, 그 권리자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이전 등록청구를 통해 대상 특허의 권리자 명의를 변경 등록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물론 법제화되기 전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에 불과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ICO 또는 투자구매대행 과정에서 약정한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 투자자가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법제화 전이지만,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 구매대행업자, 암호화폐 발행회사의 3자 관계에서, 채권자인 투자자가 채무자인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암호화폐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암호화폐지급 청구권)는 재산지급청구를 구하는 채권적 권리로서, 암호화폐 발행회사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본안소송을 통해 발행회사에 대해 구매대행자가 아닌 투자자 본인에게 직접 암호화폐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와 같은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암호화폐 법제화까지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현행 법제도에서도 민사상 권리구제 소송과 강제집행은 허용될 것입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체재산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무체 재산에 관한 권리구제 및 강제집행 방안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분쟁 민사소송 사례 - 비트코인의 인도청구 및 대상\(환가금액\)청구](#)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1. 비트코인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피고는 2017. 3. 경 원고가 피고에게 디지털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 비트코인을 보내 주면 피고가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뒤 약 한 달 후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7. 3. 13. 피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4비트코인(BTC, 이하 'BTC'라 한다)을 보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4BTC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대상(代償)청구에 대한 판단

만일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 인도의무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그 전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본래의 급부와 그 집행불능 시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였을 경우에 그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의 급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733 판결,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일자인 2017. 12. 5. 기준 시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9. 4. 무렵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국내 시가가 1BTC당 8,254,00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1BTC당 8,254,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사자문, 계약분쟁,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화해계약, 합의 등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